

漁港消息

발행경리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特設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2
568-5595~6
FAX. 568-6653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活力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수산물 漁港 개발方式 轉換

交通·流通·觀光 등 綜合機能 갖게 施設에 民間자본 誘致 積極 推進기로

水産食糧 안정供給

21세기 水産政策 추진 方向

田允喆 수산청장
수산청(인천)은 2000년까지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 국민에게 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防波堤·물양장 등 基本施設 地自體·民間別 建設

정부는 199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防波堤(방파제)와 물양장(물양장) 등 기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민투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산청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해졌다. 또한,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발달로 수산물 유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청에서는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발달을 지원하고, 수산물 유통망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총체적인 수산물

2천년대 어항을 준비하자

수산청장은 "2천년대를 맞아 어항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항의 정비는 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항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청에서는 어항의 정비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焦點

안정의 소득원도 開發을
豫算 뒷받침돼야 現實化
教育·文化 시설 등 生活환경을 改善
안정적인 소득원도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문화 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 수산청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S O C 확충키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 O C(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97정부豫算 14% 增額 方針

정부는 9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총액이 14% 증가할 방침이다. 이는 96년 예산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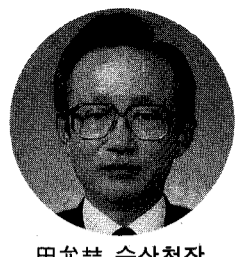
정부는 9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총액이 14% 증가할 방침이다. 이는 96년 예산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올해 漁港工事 28곳에서 着工

4월 19일 현재 총56개항중 절반 進陞

▲전국총계 수산청장인 4월 5일 신복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현재 전국 56개항 중 28곳에서 착공을 완료하고, 28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현재 착공을 완료한 항구는 28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항구는 28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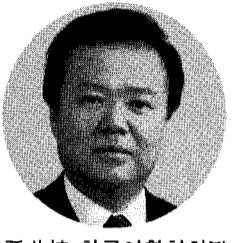
▲수산청장인 4월 5일 신복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현재 전국 56개항 중 28곳에서 착공을 완료하고, 28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현재 착공을 완료한 항구는 28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항구는 28곳이다.



田允喆 수산청장

▲수산청장인 4월 5일 신복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현재 전국 56개항 중 28곳에서 착공을 완료하고, 28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현재 착공을 완료한 항구는 28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항구는 28곳이다.

▲수산청장인 4월 5일 신복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현재 전국 56개항 중 28곳에서 착공을 완료하고, 28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현재 착공을 완료한 항구는 28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항구는 28곳이다.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수산청장인 4월 5일 신복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현재 전국 56개항 중 28곳에서 착공을 완료하고, 28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현재 착공을 완료한 항구는 28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항구는 28곳이다.

▲수산청장인 4월 5일 신복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현재 전국 56개항 중 28곳에서 착공을 완료하고, 28곳에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일 현재 착공을 완료한 항구는 28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항구는 28곳이다.

항명	도금액(백만원)	계약일	착공일	시공회사
수산항	4,020,060	3.20	3.26	(주)삼양사
현포항	4,729,200	3.22	3.27	동화건설(주)
안목항	3,486,450	3.29	4.1	신우건설(주)
축산항	2,442,000	4.2	4.4	(주)삼건사
소흑산도항	5,630,000	3.6	3.7	삼부토건(주)
어청도항	4,452,020	3.22	3.23	조흥공영(주)
수품항	2,570,000	3.28	3.29	대지종합건설(주)
모항항	2,585,196	3.28	4.3	장수건설(주)
울도항	994,500	3.29	4.1	덕산공영(주)
계마항	1,385,000	4.1	4.3	보성건설(주)
위도항	141,000	4.2	4.8	(유)동설
말도항	2,057,616	4.6	4.9	(유)영창건설
초도항	2,404,000	3.12	3.14	영진건설(주)
특임항	1,720,000	3.21	3.25	금광기업(주)
도두항	2,461,910	3.23	3.25	(주)우주종합건설
풍남항	1,746,000	3.26	3.29	건화건설(주)
김녕항	1,953,285	3.28	4.1	정한종합건설(주)
죽동항	1,347,800	3.28	4.1	금광기업(주)
광암항	1,637,000	3.29	4.1	정남개발(주)
삼덕항	1,697,000	4.1	4.2	우림종합건설(주)
신양항	882,000	4.3	4.4	삼오종합건설(주)
여서항	4,422,000	4.3	4.10	금광기업(주)
미조항	1,120,000	4.8	4.9	영생건설(주)
양도항	1,542,000	4.10	4.12	대아건설(주)
보옥항	1,254,550	4.10	4.15	남광건설(주)
매물도항	1,887,000	4.15	4.15	백제종합건설(주)
지세포항	2,600,800	4.15	4.17	성보건설산업(주)
시산항	3,921,500	4.16	4.19	금광기업(주)

수산청 동서남해 어항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양 汚染防止策 강화

全國 15개 海域 99년까지 特別관리

해양수산부(장관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첫 「韓國漁港史」 발간

2년여 자료수집... 어항발자취集大成

한국어합협회(회장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어합협회(회장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現場중심으로 轉換기로

建設機能人力 資格檢定制度

한국어합협회(회장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주 소 변경

한국어합협회(회장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단 체

한국어합협회(회장 신복일)는 4월 19일 현재 동해 어항공사에 총 56개항의 예산을 편성하고, 4월 19일 현재 28개항을 착공 완료하고, 28개항을 착공을 앞두고 있다.

契約 관련 専門職 공무원 集中양성

「長期계속」첫계약만 조달청에

건교부 내년 개방 대비... 국제관계 맞게

시장개방에 대비해 시설사업의 계약이나 공사 관리업무 등을 중추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집중양성된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계약이나 설계변경은 수요기관이나 설계변경은 수요기관이



시장이 개방되면 대외에 시설사업의 계약이나 공사 관리업무 등을 중추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집중양성된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계약이나 설계변경은 수요기관이나 설계변경은 수요기관이

SOC확충 계속

上半期中 綜合對策 수립

정부는 2/4분기의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고비영저항을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2/4분기 중 정부 2/4분기 중

또한 물류유동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분기 중

地方업체 受注기회 넓히기로

中小業體 지원 強化策 구체화

조달청은 빠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 1백억 원 이상의 22개 PQ대상 공사에서 중소기업이 보편화된 공사에 대해서는 PQ를 적용하는 대신 제한 경쟁이나 일반경쟁으로

공사를 발주, 중소기업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견 납품 40명 정도 이하의 지급제한 라미판과 아스콘의 대금 지급을 시지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우선 22개 PQ대상업체가

海岸지역 開發事業 특성맞게 統合관리

연안역개발 장기구상 마련

해안지역이 개발촉진연안, 개발유도연안, 보전연안 등으로 구분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해안지역의 개발사업은 개발연안, 유도연안, 보전연안으로 구분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양지만 보전과 개발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 해양 및 육상여가시설을 관광시설을 지역적으로 특성화시켜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자원인 이 풍요하거나 어장이나 생태계가 양호해서 보전 가치가 있는 동해안, 다도해 등의 보전연안에 대해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전지구 등

건설주체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가 각 계약형태별로 마련돼 내년부터 사용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

標準契約書 형태별 마련

건설주체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가 각 계약형태별로 마련돼 내년부터 사용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

선진 어항어촌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主要業務

- 港灣의 開發조사, 整備, 計劃, 設計
 - 一般港, 工業港, 漁港
 - 防波堤, 防潮堤, 浚渫工事
 - 各種 港灣施設, 海洋構造物
 - 港灣施設의 安全診斷
- 各種 土木工事의 計劃, 設計
 - 調査測量(陸上 및 水深)
 - 上·下水道
 - 地域 및 都市計劃(工團造成)
 - 道路 및 空港
 - 各種 運動施設
- 工事施工監理
- 環境影響評價代行

業種

- 專門技術用役業
 - 技術部門: 建設部門
 - 專門分野: 港灣 및 海岸, 上·下水道, 地域 및 都市計劃, 도로 및 港灣
- 一般測量業
- 工事施工監理專門會社
- 海外建設業(建設用役)
- 環境影響評價代行業指定
- 廣域境界測量代行業

株式會社 唯一綜合技術團

會長 李炳周
技術士(上·下水道)

代表理事 李義允
技術士(港灣 및 海岸)

서울特別市 麻浦區 東橋洞 174-13
TEL.(02)336-1854, 324-8954, 338-5971
(051)441-1811~2
FAX 338-7586

漁港計劃樹立의要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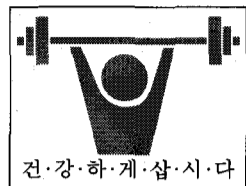
[78]

피셔리너의計劃

어·항·교·실

신물피부염의 발생기전과 알레르기예의 영향, 자주의 영향, 빛과 관련된 생기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KODOH의 알레르기성염의 영향이다. 피부염의 대안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물피부염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대표적인 것이 옷나 무이다. 이 옷나 무는 장기간 접촉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장기간 피부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옷나 무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옷나 무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독 풀

원인식물 피하는게 상책
물집은 터뜨리지 말도록

부엌이나 욕조, 화장실 등에서 다발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옷나 무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신물피부염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옷나 무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신물피부염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옷나 무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신물피부염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옷나 무의 원인은 알레르기성염과 KODOH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⑫ 재산성, 사회적 비용 편익
재산성은 사업 실시방식 및 관리·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어느쪽이든 사회적 요청이 현저히 크지 않는 한 마이너스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 단년도 수지, 누적 손익의 흑자전환, 투자자본의 회수가 적절한 기간에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 비용편익은, 투자자본에 대한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예컨대 건설에 수반하는 파급효과, 관련산업 도입에 수반하는 생산액의 증가, 고용의 증가 등))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⑬ 안전관리, 수익이용의 규칙등의 검사
피셔리너의 특성에 따른 해난대책, 어업 기기파손대책, 항로, 어항의 안전관리의 내용, 관리자의 체제등, 소요되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검사하는 동시에 어업관계자, 선박운행업자등의 종래부터의 수익이용자, 유어선등의 업자 및 이용자, 어항관리자 및 피셔리너의 정비·운영주체와의 사이에서 의견조정을 하는 동시에 수익이용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검사한다.

피셔리너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계획수립순서의 흐름의 위에서 아래로 한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미 검사한 사항의 재평가등, 피드백하면서 계획책정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피셔리너는 대규모인 것에서 소규모인 것까지 점차차별되고, 피셔리너의 종류, 규모, 계획주체등에 따라 검사할 내용이나 정도는 상이하다. 따라서, 계획되는 피셔리너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항목을 정리하여,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셔리너 계획조사

피셔리너의 정비에 관한 조사항목은 매우 많으나, 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자연조건 : 기상, 해상, 자연환경(물리, 생태환경, 경관) 등
(2) 사회경제조건 : 산업, 인구, 생활, 역사,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
(3) 교통조건 : 배후권과의 통로(도로, 철도, 공항 등) 등
(4) 각종계획 : 어항, 항만, 도로, 도시, 하수도 등의 재계획 등
(시·정·촌계획, 광역시정촌계획, 도도부현계획, 리조트 구상, 지방권계획, 전국총계획 등)
(5) 각종 법규제 :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산림법 등에 의한 토지이용, 개발규제 등
(6) 유어선등의 실태 : 유어선등의 종류, 세력, 어항의 이용상황, 어업과의 조정(어항이용, 어장이용), 타지구의 유사시설의 분포, 세력, 계획 등
(7) 어항의 실태 : 유어시설, 배치, 어업종류, 생산량·액, 어항이용 상황, 시설정비계획 등

(1)~(5)에서는 주로 개발가능성, 지역과제, 기본방침등에 있어서의 피셔리너 정비의 위치부여나 규모 도입기능, 성격, 종류, 다른 사업과의 연휴, 조정의 검사를 행한다.

(6), (7)에서는 피셔리너의 종류, 성격, 도입기능, 유어선의 세력예측에 의거한 수용척수, 어항의 장래계획등과의 조정

의 검사를 행한다.

이에따라, 피셔리너의 기획구상-지역에서의 위치부여, 성격, 종류, 시설규모(수용척수, 도입기능에 의거하여 필요한 제시설량) 및 그 배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기본 방침을 책정함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연조건 : 파랑, 바람, 조류, 지진, 수심
교통조건 : 액세스(access : 도로)→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재산성
유어선등의 실태 : 유어선등의 종류, 세력 → 시설규모, 필요시설, 어업과의 조정 → 입지 가능성(보양, 낚시의 어장) 어항 : 현유시설, 시설정비계획 → 위치, 구조, 배치(Lay-out), 재산성

피셔리너의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

기본방침의 설정과 정비개념

피셔리너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문제해소형
유어선등이 많기 때문에 어선의 어항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피셔리너를 정비하여 유어선등을 분리수용함으로써, 어항에 있어서의 어업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또 유어선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어장이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주변의 유어선등을 어항에 집약하여 유어선의 조직화등을 도모함으로써, 어장이용조정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목적의 경우, 사업주체는 지방 공공단체가 중심이 된다.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 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민사조정제도(上)

비용 적고 절차 신속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한 원만한 용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3. 민사조정 신청

가. 민사조정 신청의 시점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나.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

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라.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 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청구목적물 가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수수료액은 10,000원이다.

그 밖에 대법원 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4. 민사조정절차

가.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 담당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조정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조정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도 있다.

나. 조정기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 장소가 통지된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